

구미시청소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번호	
------	--

제출일자 2005. 10. .

제 출 자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상담센터에 필요한 경비에 국비보조를 포함시키고 상담원의 근무시간을 17:00까지로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.

2. 수정 주요골자

- 토요일 상담실 운영시간을 17:00 까지로함(안 제10조)
- 상담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국비보조를 포함(안 제13조)

3. 참고사항

- 청소년기본법 제17조, 제18조, 제46조

구미시청소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구미시청소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0조중 “할 수 있다”를 “ 한다”로 하며

안 제13조중 “도비보조”를 “ 국·도비보조”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제10조(상담원 등의 복무) ①근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준용하며 야간 상담실을 21:00까지 운영할 수 있으며 공휴일에는 전화자동응답기를 이용하여 상담 및 예약을 받을 수 있다. 단 토요일의 상담실 운영은 17:00까지로 할 수 있다. ②(생략) ③(생략)	제10조(상담원 등의 복무) ①----- ----- ----- ----- 한다. ②(현행과 같음) ③(현행과 같음)
제13조(예산) ①(생략) ②상담센터에 필요한 경비는 <u>도비보조</u> 및 시비로 한다.	제13조(예산) ①(현행과 같음) ②----- <u>국·도비보조</u> -----.

구미시청소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청소년기본법」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구미시청소년상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 및 위치) 상담센터의 명칭은 구미시청소년상담센터(이하 "상담센터" 이라 한다)이라 칭하며, 사무실은 구미시 관내에 둔다.

제3조(설치기준) 청소년상담센터는 사무실, 개인상담실, 집단상담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그 전체면적은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.

제4조(운영) 상담센터는 구미시장(이하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관리·운영한다. 단, 상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소년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·운영하게 할 수 있다.

제5조(기능) 상담센터는 청소년의 올바른 인격형성과 조화로운 성장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청소년상담 사업계획수립 및 시행
2. 청소년 및 학부모대상의 개인·집단 및 전화·사이버상담
3. 청소년 및 학부모대상의 각종 심리검사 실시
4. 청소년대상 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5. 청소년상담자원봉사자 및 청소년지도자 교육·연수
6. 청소년상담관련 정보·자료수집 및 제공
7. 청소년상담관련 유관기관간의 연계 지원망 구축
8.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상담에 관한 사항

제6조(구성) 상담센터는 상담센터장 1명, 선임상담원 1명, 상담원 1명, 행정원 1명으로 구성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 여건에 따라 증원할 수 있다.

제7조(자격과 임용) 상담센터 직원의 임용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.

1. 임용의 연령은 상담원은 35세 이하, 행정원은 30세 이하로 한다.
2. 상담센터장은 선발자격기준을 갖춘 자를 전문상담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자 중 시장이 위촉하거나 청소년업무 담당과장(이하 “담당과장”이라 한다)을 겸직하게 할 수 있다.
3. 상담원은 경상북도청소년상담센터 운영지침 선발기준에 의거 시장이 임용한다.
4. 상담원 등의 임용 자격기준은 별표 1 과 같다.

제8조(신분보장과 정년) ①직원은 형의 선고, 징계처분 또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, 강임, 면직 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.

②직원의 정년은 상담센터장 60세, 선임상담원, 상담원, 행정원은 57세로 한다.

제9조(직원의 면직) 상담센터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당연퇴직 또는 시장이 직권 면직시킬 수 있다.

1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
2. 제8조의 근무상한 연령에 해당될 경우(생년월일이 1월부터 6월사이 이면 6월30일에 7월부터 12월사이 이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)
3. 직제개편 또는 예산편성 등 인력조정이 불가피한 경우
4.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직무태만,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 하다고 인정될 경우

제10조(상담원 등의 복무) ①근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준용하며 야간 상담실을 21:00까지 운영할 수 있으며 공휴일에는 전화자동응답기를 이용하여 상담 및 예약을 받을 수 있다. 단 토요일의 상담실 운영은 17:00까지로 한다.

②야간상담을 실시하였을 경우 상담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는 범위 안에서 그 상담원에 대하여 익일 오전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.

③상담센터장은 상담센터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.

제11조(상담센터장의 직무) ①상담센터장은 매년 초 운영계획을 수립, 시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.

②담당과장은 상담센터의 업무 및 직원의 복무전반에 대하여 지휘 감독한다.

제12조(보수 및 수당 등) ①상담센터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청소년위원회가 정하는 지침에 따라 봉급,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한다.
②직원의 경력산정은 별표2의 기준에 의한다.

제13조(예산) ①시장은 상담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한다.
②상담센터에 필요한 경비는 국·도비보조 및 시비로 한다.

제14조(운영협의회 구성) ①상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미시청소년상담운영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②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③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1명은 상담요원 중에서 회장이 지정한다.
④위원은 청소년관련 전문가, 대학교수, 상담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, 청소년관련 종사자,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담당과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.
⑤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단, 제4항의 당연직위원은 청소년 업무담당 과장으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.
⑥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「구미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5조(협의회의 기능 및 운영) ①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지역내 청소년상담관련 정보 교환
2. 청소년의 정신건강문제 등 전문분야에 대한 검사·진단·치료 및 문제점 협의
3. 상담센터 운영계획의 심의 조정 및 실적평가 분석
②협의회의 회의는 시장, 상담센터장 또는 위원 3분의1의 요청이 있을시 개최한다.

제16조(상담자원봉사자) ①상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약간명의 청소년상담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.
②청소년상담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7조(수익자 부담) 청소년 및 학부모대상의 각종 심리검사용지 구입에 한하여 수혜대상자에게 실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
제18조(준용규정)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청소년위원회가 정하는 청소년상담센터운영 지침 및 「지방공무원법」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.

제19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임용된 상담센터 직원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거 임용된 것으로 보며, 종전의 지침에 의거 시행된 상담센터 운영의 제반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거 운영한 것으로 본다.

[별표 1]

자 격 기 준

구 분	자 격 기 준
상담센터장	· 대학원의 상담분야(청소년(지도)학, 교육학, 심리학, 사회복지(사업)학, 정신의학, 아동(복지)학 등)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상담관련 실무에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· 대학원의 상담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상담관련 실무에 5년 이상 경력자 · 전문적인 상담에 대한 능력과 자질이 있다고 전문상담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중 시장이 인정하는 자
상담부장	· 대학원의 상담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· 대학원의 상담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상담관련 실무 5년 이상 경력자 · 선임상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
선임상담원	· 대학원의 상담관련분야 석사학위이상 취득 후 상담관련 실무에 3년 이상 경력자 · 상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
상 담 원	· 대학원의 상담관련분야(청소년(지도)학, 교육학, 심리학, 사회복지(사업)학, 정신의학, 아동(복지)학 등)석사학위이상 취득후 상담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· 4년제 대학 졸업후 상담관련 실무 3년이상 경력이 있는 자
행 정 원 (상담보조원)	· 2년제 이상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해당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

※ 상담관련 분야는 청소년(지도)학, 교육학, 심리학, 사회복지(사업)학, 정신의학, 아동(복지)학 등임

[별표 2]

경 력 산 정 기 준 표

직종별	구 분	경 력	환산비율
상담직	"갑" 경력	- 대학전임강사 이상경력 - 박사과정 이수연한(3년한) - 석사과정 이수연한(2년한) - 대학상담기관 및 관련학과 전임요원 이상 근무경력(석사이상과정 이수후의 조교경력 포함) - 공공상담기관의 상임상담원 근무경력, 단, 공공상담기관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설립한 상담기관 - 군경력(의무복무기간에 한함)	100%
	"을" 경력	- 대학 시간강사(주당 8시간 이상) - 법인단체가 설립한 전문상담기관의 상임 상담원 근무경력 - 대학상담기관 및 관련학과의 조교경력	80%
	"병" 경력	- 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국영기업체 근무경력 - 청소년상담실 행정원 근무경력 - 시장이 인정하는 사설 상담기관의 상임 상담원 근무경력	50%
행정직	"갑" 경력	- 상담 또는 행정업무실무 경력 - 석사과정 이수연한(2년한) - 전문대학이상 이수연한(전문대학과정 2년 한, 학사과정 4년한) - 군경력(의무복무기간)	100%

- ※ 1. 초임 상한호봉은 10호봉을 초과할 수 없음.
 2. 경력산정기간이 중복되는 경우는 그 중복기간에 대하여 하나의 경력만 인정
 3. 관련학과는 청소년(지도)학, 교육학, 심리학, 사회복지(사업)학, 아동(복지)학 등